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중재제도

유재천

서강대 신방과 교수 중재위원

매스 미디어는 국민들이 원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며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해주는 사회제도다. 현대사회에서 매스 미디어 없이 개인이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유통될 수 없다. 정보의 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에 정보유통의 자유, 즉 언론의 자유가 주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 또는 책임을 전제로 보장되는 것이다.

매스 미디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책임 있게 보장하기 위해 공개하는 정보가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공정하고 공평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또 포괄적인 맥락속에서 진실하게 공개해야 하고, 특히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매스 미디어는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언론에 의한 개인적 법익 즉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두드러진다.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언론에 의한 침해는 명예훼손과 사생활의 침해로 요약된다. 명예훼손은 개인의 명성이나 신망에 대한 침해를 말한다.

훼손이란 개인에 대한 존엄·경의·신용 등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개인에게 불이익을 야기시키는 것, 또는 개인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등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여섯가지로 요약된다. (1) 명예의 주체인 사람, 즉 피해자의 특정성 또는 특정 가능성 (2)행위의 공연성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할 때 (3)사실의 적시로서, 적시된 사람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특질이면 무엇이나 전부 해당된다. 다만 그 사실은 형법 제 310 조의 사실증명의 경우를 제외하고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된다. (4) 사실의 적시행위로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방법으로 구두이건 문서이건 제 3자가 인지할 수 있는 외부적 표명은 모두 이에 포함된다 (5)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침해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침해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이 된다. (6) 고의의 여부로서, 어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기타 출판물이나 전파매체를 통해 전기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을 때에는 성립되며 고의성이 개재되었을 때에도 물론 성립된다.

이에 비해, 사생활의 권리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공표된 내용이 사생활의 사실 또는 사생활의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어야 하고, (2)일반인의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됨으로써 심리적 부담이나 불안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일반인에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개인이 실재적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졌어야 된다 (4) 공개된 사적 사항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다. (5) 공표된 사항의 진실성이나 공개자의 악의의 결여는 항변이 될 수 없으나, 당해 당사자의 문서에 의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와 같은 언론에 의한 침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언론중재제도다.

언론중재제도는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언론중재제도는 언론과 시민과의 관계에서 강대한 권력으로 작용하는 언론이 보도에 의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 구제를 위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신설한 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민·형사상의 구제제도는 그 성립요건이나 실현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실효성이 적었을 뿐 아니라 그에 의한 구제는 가해자인 언론에 대한 형벌 또는 손해배상 등의 제재만이 가능할 뿐 피해자 자신의 발언을 보도하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불완전한 구제제도였던 것이다. 언론기본법이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반대진술을 보장한다는 점 및 신속한 재판절차에 따르게 하였다는 점뿐 아니라 보도된 언론매체의 동일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 자신의 반대사실 주장을 보도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었다. 이러한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자유의 주체를 언론매체로 보기 보다 국민 혹은 공중으로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는 접근권의 일부를 입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구미에서 일찍부터 시행해온 불만처리제도의 도입이라 하겠다. 그러나 불만처리제도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언론계와 공공의 자율적 기관에 의해 정착된 데 반해 우리의 언론중재제도는 법제화된 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제도임을 나타내 준다.

우리의 경우 언론에 의한 자율적 통제가 높은 직업윤리의 정착을 통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공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법률적 조정기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한국신문윤리위원회나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등과 같은 정기간행물의 자율적 통제기구의 제소사건처리절차상 미비로 인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율적 구제행위에 대한 언론계의 인식부족에 따른 제재조치의 불이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중재제도의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고시켰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민주적 제도들이 공중에게 책임질 때만 가능한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언론은 지극히 중요한 제도의 하나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에서의 공중에 의한 언론통제채널은 대단히 미약했다.

우리 언론의 직업적 윤리수준을 제고시키고 언론에 의해 입은 사익의 구제를 통한 인권의 옹호를 위해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과 졸,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매스컴 전공)

□ 저술: 「한국의 언론」 (1968. 공저). 「한대 사회와대중문화」 (1975. 공저) 「인류의 미래상」 (역서), 「한국언론과 언론 문화」 외

□ 현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한국언론학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